

2026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시행 공고

충청북도와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「2026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6월 8일

충청북도지사
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[추진목적]**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성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근로자 복지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
- [신청대상]** 공고일 기준 도내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고용증가율, 고용 안정성, 근로복지환경 등이 우수한 기업
- [인증기관]** 충청북도
 - 사업주관: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

[인증규모] 10개사

계	20 ~ 39인	40 ~ 59인	60 ~ 79인
10기업	5개사	3개사	2개사

- [지원내용]**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직·간접적 혜택 제공

2 인증대상

□ 대상기업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¹⁾

- 가. 공고일 기준 2년 이상²⁾ 도내 소재한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(제조업 또는 지식산업서비스 기반 업종)
- 나.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※ 공고일(6.8일) 기준 고용보험가입자(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제외)
- 다. 최근 1년 간³⁾ 지역별 고용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

- 1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
- 2) 2024. 6. 8. 이전 설립 및 도내 소재 기업
- 3) 2025. 1. 31. ~ 2026. 1. 31.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동시점 대비 증가율
- ※ 동일 법인 소속 복수 사업장의 중복 신청 불가(1개 사업장만 신청)

□ 신청자격

- 최근 1년 간 고용보험가입자 수 기준 고용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
- ※ 전년('25. 1. 31.) 동시점('26. 1. 31.) 대비 고용증가율 평가

<기업 규모별 지원금 및 지역별 고용증가율 요건>

(단위: 개소, 백만원)

구 분	선정 개소수	지원단가 (기업당)	지원금액 (전체)	고용증가율*	
				일반지역	인구감소지역*
계	10		295		
20~39인	5	22	110	5% 이상	2% 이상
40~59인	3	33	99		
60~79인	2	43	86		

* 고용증가율 : $\{(26\text{년 } 1\text{월 말 근로자 수} - 25\text{년 } 1\text{월 말 근로자 수}) \div 25\text{년 } 1\text{월 말 근로자 수}\} \times 100$

* 대상 기간 : 2025년 1월 31일 ~ 2026년 1월 31일,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환산

* 인구감소지역 : 제천,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, 단양

☞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(행정안전부: 제2021-66호)

3 제외대상

< 신청 제외 대상 기업 >

-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만료되고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- 공고일 기준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4조 제1항)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'CCC+' 이하 및 그에 준하는 등급, '투기적 등급' 인 경우
- 근로기준법·근로자 참여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공고일 기준 국세·지방세 체납, 임금 체불, 법령위반,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- 동일 그룹으로 인수합병 또는 인력이동, 통폐합을 통해 고용이 증가한 기업
-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, 고용알선·인력공급업, 소비.향락.오락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기업 등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- 비영리 법인 또는 사업장, 한시적 운영 사업장, 고용감소기업
- 기타 본 사업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

4 인증 및 지원내용

인증내용

- 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패 등 교부

인증기간 :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간 유효

지원내용

①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【붙임1】

② 근로자 복지비 지원

- 지원항목 : 건강관리·자기계발·레저문화·가족친화 등
- 지원대상 : 선정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(고용보험 가입자)
- 지원방법 : 온라인 복지몰(전문기업 협약)을 통한 구매 등

구분	활 용 범 위
건강관리	- 건강검진, 병원 진료비, 안경 및 렌즈 구입, 보청기 구입, 건강관리 시설 이용(헬스장, 필라테스 등)
자기계발	- 학원 수강료, 시험 응시료, 도서 구입비, 세미나 및 교육 참여비 등
여가활동 (레저·문화)	- 숙박시설(호텔, 리조트 등), 항공권, 렌트카, 레저시설 이용, 운동용품 구입(운동화 및 운동기구 등) - 문화예술 공연(영화, 연극, 뮤지컬·콘서트 등), 전시회, 박물관, 유적지, 동물원 등 관람
가족친화	- 취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(학원 등 사교육 목적 제외), 기념일 꽃배달, 효도 관광 등

※ 지원금은 포상 목적으로 지급(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에 미해당)

□ 지급제외 항목

- 사행성·불건전한 지출(보석, 복권, 게임, 도박, 유흥 등)
-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(상품권, 주유권, 증권 등)
-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 (성형, 라식·라섹, 임플란트·치과보철 등)
- 기타 증빙이 불가능한 지출 (식사비, 유류비 등)
- 근로자 복리후생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

5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2026. 6. 8.(월) ~ 6. 20.(토)

※ 신청서 및 모든 제출서류가 완비되어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 인정(서류 누락·미비·지연 제출 등은 접수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)

□ 신청방법 : 이메일 신청 [방문, 우편접수 받지 않음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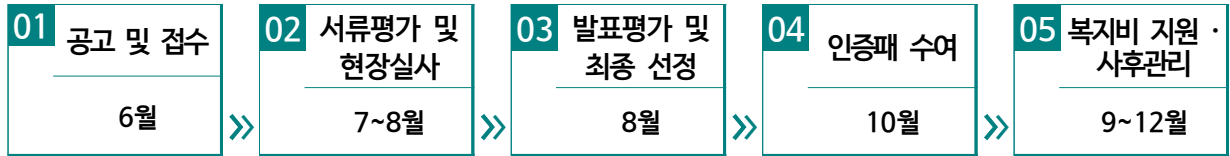
- 문의처 : (재)충북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고용우수기업 담당자(043-230-9777)
- 이메일 : cba9777@naver.com - 파일명 : [26 고용우수기업] 기업명.zip
- ※ 압축 파일명 예시 : [26 고용우수기업] (주)충북.zip

□ 제출서류 : 충북기업진흥원(cba.ne.kr) 지원사업 안내 → 사업공고/신청 서식 다운로드

연번	목록	부수	내용
1	사업 참여신청서	1부	
2	중소기업 확인서 (유효기간 확인)	1부	· 발급처 - 중소기업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
3	사업자등록증(사본)	1부	· 국세청 홈택스 발급 기준(정부24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불가)
4	공장등록증(사본)	1부	· 발급처 : 정부24 (gov.kr/portal)
5	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(공고일 이후 발급분)	각 1부	· 발급처 : 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
6	기업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(공공기관 제출용)	1부	· 공고기간 내 유효한 신용평가서(유효기간:발급일로부터 1년) [붙임2] 기업경영 건전성 참고
7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1부	
8	사업 참여확약서	1부	
9	고용창출 관련 인증 [붙임3 참고]	각 1부	· 청년친화 강소기업, 인재육성형 중소기업, 청년일자리 우수기업,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,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
10	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(공고일 이후 발급분)	각 1부	· 각 시점별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(총 4부) 〈대상시점〉 ① '25. 1. 31일 / '26. 1. 31일 (각 시점별 1부씩) 총 2부 ☞ 예시) 25.1.31일 경우 '25.1.31.~25.1.31.'로 조회 ② 공고일('26. 6. 8일) 기준 발급분(기업 규모 등 확인) 1부 ③ '25. 2. 1. ~ '26. 1. 31. 기간 발급분(고용 확인) 1부 · 발급처 :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 (total.kcomwel.or.kr) · 발급방법 : 증명원·신청 → 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→ 조회기간 설정 후 발급
11	정규직 및 취약계층 채용 실적 증빙	각 1부	· 정규직 채용 실적 - 고용형태(정규직)를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가능한 자료(근로계약서, 근로자 명부, 인사시스템 출력물 등) · 취약계층(고령자, 장애인 등) 채용 실적 - 장애인등록증, 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함 ※ 고용증가 인원 중 위 실적 해당자 자료만 제출
12	본 원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		

6 심사 및 선정

□ 선정절차



□ 평가방법 : [1차] 서류심사 → [2차] 현지실사 → [3차] 발표평가

- (1차) 서류심사 : 심사표에 의한 정량평가
- (2차) 현지실사 : 신청서 진위 여부, 기업복지제도, 시설 확인 등 현장 인터뷰
※ 평가단 구성 : 道 담당 공무원, 노무 관련 전문가, 사업 실무자 등
- (3차) 발표평가 :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후 최종선정

< 동점일 경우 우선 순위 >

① 근로자 증가율 고득점 기업 ② 근로자 증가수 고득점 기업 ③ 장기근속자 비율 고득점 기업

□ 심사기준 (100점)

- (정량평가) 경영 건전성(5), 지역 균형성(3), 일자리성장성(15), 일자리안정성(10), 일자리 포용성(10), 기타(3점), 사업 연계 실적(4)
- (정성평가) 근로복지환경(30)
- (발표평가) 고용성과 및 우수성,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(20)

7 유의사항

- 신청시 자격요건 등 사업 참여의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시길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신청서 접수 결과 적격 기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참여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

- 불이익(신청 및 인증취소, 지원금 반환 등)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
- 사실 확인 의뢰 결과, 제출서류와 상이한 부분 발견 시 심사 제외
(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제출본 등 기타 제출 서류 일체)
 -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현장실사 대상이며 방문일정은 기업별 안내 예정
 - 자세한 사항은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로 문의 바랍니다.
(☎ 043-230-9777, ✉ cba9777@naver.com)

기관명		지원내용											
충 청 북 도	일자리정책과	○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, 현판 교부											
		○ 고용우수기업 근로자 복지비 지원(인증 당해연도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기업 규모</th> <th>선정 개소 수</th> <th>지원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~39인</td> <td>5</td> <td>22백만원</td> </tr> <tr> <td>40~59인</td> <td>3</td> <td>33백만원</td> </tr> <tr> <td>60~79인</td> <td>2</td> <td>43백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업 규모	선정 개소 수	지원금액	20~39인	5	22백만원	40~59인	3	33백만원	60~79인	2
	기업 규모	선정 개소 수	지원금액										
	20~39인	5	22백만원										
40~59인	3	33백만원											
60~79인	2	43백만원											
경제기업과	○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금리우대 0.5% -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												
세정담당관	○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(3년) ※ 단,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												
	국제통상과	○ 수출기업화 시책 사업 참가 시 가점 부여											
한국은행 충북본부		○ 중소기업 지원자금(전략지원부문) - 업체당 지원한도 20억 원(금융기관 대출취급 기준 40억원의 50%) 이내											
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		○ KSA 회원사 입회비 면제 - 중소기업 : 20만원											
한국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		○ 수출신용보증 - 보증료 할인 : 최대 50% - 한도 우대 : 추가 5~10억원 (상시근로자수 증가 등 감안) ○ 수출보험 - 보험료 할인 : 최대 50% - 한도 우대 : 지원한도 최대 1.5배											
청주상공회의소		○ 국내·외 박람회 참가 및 해외통상 촉진단 참가 시 가점 부여 ○ 1:1 기술지도 및 특허사업 우선 지원											

※ 인센티브 지원기관의 시행 연도별 사정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성 있음

□ 평가방법
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제4조 제1항)에 의거 신용정보 업자가 발급한 공고 기간 내 유효한 신용평가서
- 해당 서류는 필수사항이며, 미제출 시 0점 처리

□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

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	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	③ 기업신용평가 등급	점수
AAA		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	5
AA ⁺ , AA ^o , AA ⁻	A1	①의 AA ⁺ , AA ^o , AA ⁻ 에 준하는 등급	
A ⁺ , A ^o , A ⁻	A2 ⁺ , A2 ^o , A2 ⁻	①의 A ⁺ , A ^o , A ⁻ 에 준하는 등급	
BBB ⁺ , BBB ^o , BBB ⁻	A3 ⁺ , A3 ^o , A3 ⁻	①의 BBB ⁺ , BBB ^o , BBB ⁻ 에 준하는 등급	4
BB ⁺ , BB ^o	B ⁺	①의 BB ⁺ , BB ^o 에 준하는 등급	3
BB ⁻	B ^o	①의 BB ⁻ 에 준하는 등급	2
B ⁺ , B ^o , B ⁻	B ⁻	①의 B ⁺ , B ^o , B ⁻ 에 준하는 등급	1
CCC ⁺ 이하	C이하	①의 CCC ⁺ 이하에 준하는 등급	비대상

주1) 심사대상 제외 :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(highly speculative) 등급인 경우

-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: CCC+ 이하
-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: C 이하
- ③ 기업신용평가 등급 : ①, ②에 준하는 등급

□ 신용정보업체 현황

구 분	상 호	홈페이지	구 분	상 호	홈페이지
신용 조회사	(주)나이스디앤비	www.g2brating.co.kr	신용 조회사	한국평가데이터	www.kodata.co.kr
	나이스평가정보(주)	www.ecredit.co.kr	신용 평가사	NICE신용평가	www.nicerating.com
	SCI평가정보(주)	www.bizrating.co.kr		한국기업평가(주)	www.korearatings.com
	(주)이크레더블	www.srms.co.kr		한국신용평가	www.kisrating.com

1.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(고용노동부 인증)

- (인증개요)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실적 등 고용 활성화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
- (인증기관)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
- (평가방법) 「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」 인증 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에 점수 부여
- (인증기간) 선정일로부터 3년

2. 청년친화 강소기업(고용노동부 인증)

- (인증개요) 임금·고용안정·혁신역량·일생활 균형 등이 우수하여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- (인증기관)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
- (평가방법) 「청년친화 강소기업」 인증 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에 점수 부여
- (문 의 처) (사)벤처기업협회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사무국
- (인증기간) 직전년도 인증기업에 한하여 점수 부여

3. 인재육성형 중소기업(중소벤처기업부 인증)

- (인증개요)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- (인증기관)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
- (평가방법) 「인재육성형 중소기업」 지정서 유효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에 점수 부여
- (문 의 처)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
- (인증기간) 인증일로부터 3년

4. 청년일자리 우수기업(충청북도 인증)

- (인증개요)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 등이 우수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청년일자리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
- (인증기관)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
- (평가방법) 「청년일자리 우수기업」 인증 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에 점수 부여
- (문 의 처)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지원부
- (인증기간) 직전년도 인증기업에 한하여 점수 부여

5. 노인일자리 창출기업(충청북도 인증)

- (인증개요) 「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
- (인증기관)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
- (평가방법) 「노인일자리 창출기업」 인증 기간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기업에 점수 부여
- (인증기간) 인증일로부터 2년